

직제 규정

2025. 4. 2. 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광진구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체육회의 조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임원) ①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체육회의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.

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,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(직원의 구분) ① 체육회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별정직, 일반직, 지도직, 계약직으로 한다.

② 별정직은 다음과 같다.

1. 사무국장

③ 일반직, 지도직은 5급에서 9급까지로 구분한다.

④ 회장은 체육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원 외로 계약직을 둘 수 있으며, 계약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5조(조직 및 기구) ① 체육회의 조직은 회장이 정한다

② 각 부서의 팀의 구성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이 조정한다.

③ 체육회 사무국의 정원은 [별표 1]과 같다.

제5조의2(한시기구)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한시기구의 정원, 업무분장, 운영기간 등은 별도로 정한다.

③ 회장은 한시기구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는 등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한시기구를 폐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직) 부장은 일반직 5급부터 6급, 팀장은 6급부터 7급까지로 보한다.

제7조(사무국장) 사무국장은 사무국 전 직원을 지휘, 감독하며 사무전반을 총괄한다.

제8조(부장) 부장은 각 팀원을 지휘 감독하며 팀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 유고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팀장 및 대리) ① 팀장은 팀원을 관리하고 업무를 협조하며 부장 유고 시 선임 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대리는 팀장을 보좌하고 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업무분장) 회장은 사무국 업무분장을 별도로 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부서의 신설 및 병합) 회장은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의 기구를 신설 또는 병합할 수 있다. 단, 긴급한 사항은 선조치 후 이사회 보고한다.

제12조(정원) ① 사무국의 정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.

다만, 구보조금과 관련된 정원 조정은 광진구와 사전협의를 거쳐시행한다.

② 1년 이상 휴직자가 발생한 경우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휴직기간 동안 보충할 수 있다. 단,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휴직기간 동안 보충할수 있다.

제13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[2025. 4. 2.]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사 무 국 정 원 표

직급	직군, 직렬, 직류	급수	정원	비고
별정직	총괄	4급	1	사무국장
일반직	행정, 일반, 지도,	5급	0	
		6급	1	
		7급	3	
		8급	4	
		9급	7	
			16	

직 위 명 칭 표

구분	급수	직위명	비고
일반직/지도직	5급~6급	부장	
	7급	팀장, 대리	
	8급	대리, 주임	
	9급	주임	
계약직 직원		사원	
연봉제 적용대상 계약직 직원의 직위는 별도로 정한다			